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36

2024년 6월 17일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가. 제안이유

-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서울시 가구 중 22.2%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반려인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숙박시설 부족으로 숙박·당일 여행도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 한해 13만4천마리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비율도 높고, 불법매장 등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은 반려동물 관광 여가문화 및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월 5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양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한 본 실시협약(안)
 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
- 당 사 자 : 푸른도시여가국장, 연천군수
- 목 적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결정

나. 추진경위

- '24. 1. 5. : 서울특별시-연천군 업무협약 체결
- 운영인력 : 세부 운영조직은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의 구성

다.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권리와 의무,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 의무,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연천군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 기여방안, 지역주민 혜택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공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실시협약(안) 구성

- 전체 구성 : 제24조로 구성
-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권리와 의무(제3조), 사업내용 (제4조), 사업기간 등(제5조), 사업계획서의 변경(제6조), 서울특별시의 의무(제7조),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제8조)
-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제9조), 연천군의 의무사항(제10조), 지역발전 기여방안(제11조), 지역주민 혜택(제12조), 사업의 시행 승인과 변경승인 등(제13조)
-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제14조), 공사의 착수(제1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제17조), 문화재의 처리(제18조), 민원처리(제19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제20조), 협약의 해지 등(제21조), 협약의 종료(제22조), 관련 법규의 적용 등(제23조), 분쟁의 해결(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등

나. 예산조치 : 2024년도부터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이 반려동물 관광 여가문화 및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조성하고자 체결한 업무협약('24년 1월 5일)에 대하여, 실시협약 전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나. 검토 의견

1) 사업개요

- 서울시는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따라 시민의 수요를 반영1)하기 위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와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이하 "추모관")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경기도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2)에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추진 중임.
-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76억 8천5백만원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 주요 시설은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반려견놀이터, 야외수영장, 야외학습장, 문화센터(동물훈련소, 카페) 등이 있으며, '추모관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85억 9천2백만원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여 2027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동물화장장, 봉안당, 추모실 등으로 구성됨.

^{1) 2023} 서울서베이 자료,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가구 22.2%, 반려동물 수 114만 7천마리. 2022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주요내용: 반려동물 동반 여행 희망(74.4%), 숙박·관광지 부족 등 장애 존재(22%),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부족(15%), 동반 관광지 부족(14%)

²⁾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119,095㎡(국유지 7,513㎡, 연천군유지 111,58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39,273㎡(연천군유지)

○ 「동물보호법」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제28조에는 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추모관'은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 되지만, '테마파크'와 관련해서는 별도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추진경위

- 푸른도시여가국은 지난해 7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지 검토, 사례조사, 관계법령 검토를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내 조성이 어렵 다는 판단을 내린 후 사업대상지가 연천군으로 결정되었으나, 제출된 자료 에서는 연천군으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음.
- 지난 1월 4일 연천군과의 '업무협약' 이후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공동으로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조성하여 서울시민과 연천 군민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수행, 부지환경 조정, 토지매입 협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협약(안) 작성 등의 실무협의(8차)³)를 진행해 왔음.
- '토지매입 협의'와 관련하여 연천군이 소유 중인 토지(이하 "군유지")에 더해 국유지⁴)를 매입완료 한 후 서울시에게 매각하도록 하였으며, 매입을 시급히 추진하여 토지가 상승에 대응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³⁾ 실무협의 주요내용

¹차(1월 10일, 기본구상 연구결과 공유, 추진일정), 2차(1월 18일, 기관별 요청사항 협의), 3차(2월 23일, 부지매입 방법,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4차(3월 7일, 지역주민 상생협의체 회의 등), 5차(3월 28일, 실시업무협약 추진), 6차(4월 17일, 공사 사전작업), 7차(5월 13일, 공사 사전작업, 실시계획인가, 환경영향평가 등), 8차(5월 23일, 실시협약(안) 쟁점사항 논의)

⁴⁾ 연천군이 매입할 국유지는 연천군이 2017년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시 매입예정 부지로 추정됨

-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위탁운영 방식 및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과 인력채용에 관한 사항, 수익금 일부를 연천군 군남면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공사 사전작업'으로 토지 지질조사, 옹벽 안전진단, 평탄화 작업 등을 논의하였음.
- '추모관'건립과 관련하여 최초 지역주민들이 건립에 반대하여 연천군은 "군남면 주민상생협의체⁵)"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현재는 설치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의 발전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전략, 일자리 채용, 시설대관 우대, 사용료 감면등의 간접 지원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파악됨.

〈군남면 주민상생협의체 추진 경위〉

주민상생협의체 1차 회의		주민상생협의체 2차회의&현장답사		주민상생협의체 3차 회의	공청회 개최
2월 4째주 (2.19.~2.23.)	V	3월 2째주 (3.4.~3.8.)	ľ	4월 2째주 (4.15.~4.16.)	4월 3째주 (4.24.~4.26.)

○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절차로 **투자심사**6)를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2개 사업 모두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으며, '테마파크'는 '사업추진 근거에 대한 논리 보완'을 위해 서울시민의 수요조사(설문)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추모관'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요구되었음.7)

설문조사 결과8) '테마파크' 조성 동의는 71.2%, 방문의향은 82.7%으로 나타났으며, '추모관' 조성 동의는 63.4%, 방문의향은 82.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되지 않아 정확한 결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임.

⁵⁾ 상생협의체 구성 : 20명(지역주민 10명, 동물전문가 2명, 공무원 8명)

^{6) 2024}년 제2차(4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 통보

⁷⁾ 수목장(50%), 벽과 담 형태 봉안담(43.3%), 건물 안 봉안묘(40.6%), 일반 봉안묘(28.6%) 등

^{8) 2024}년 상반기 시정여론조사(홍보기획관), 2024년 서울시 동물보호·복지 시민인식 조사, 설문기간('24.5.28.~6.3.)

○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유원지)의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으로 수립 제외대상으로 분류9) 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심의는 없었으며, '추모관'의 경우 심의결과 '적정'10) 으로 판단됐으나 기타 의견으로 '연천군과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3)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이하 "조례")에서는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의무부담"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 범위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제1호)와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의 사무(제2호)가 해당됨.

- 본 동의안은 협약서(안) 제7조(서울특별시의 의무),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 제14조(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토지매입 등 재정부담을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부지를 연천군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재정에 관한부분을 고려하면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판단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됨.
-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례 제6조(자료제출)11)에서 구체적인

⁹⁾ 테마파크(유원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0) 2024}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재산관리과-5910, '24. 5. 16.): 적정(의견제시)

의무부담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서(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안 및 별도 제출 자료 확인 결과 누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본 '실시협약' 동의안 제출 전 지난 1월 최초 '업무협약' 체결 시 서울
 시의 구체적인 이행 사무나 부담 의무를 알 수 없다는 점과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회 동의'를 생략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다소 쟁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려동물 추모관'의 경우「동물보호법」제71조 및「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제28조를 근거로 추진한 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2개 사업을 동시 추진하였음.
- 또한, '반려동물 추모관'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업무협약' 제3조에서 서울시가 사업부지를 매입한다고 명시된 점 그리고 당시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12)이라는 점에서 '업무협약'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13)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12) 2024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제출(2024.5.31.) "동물보호 문화확산" 사업에 본 협약 사업비 1.100백만원 편성
- 13)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¹¹⁾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협약 이행 관련

- 협약 이행의 선제조건으로 협약서 제8조(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등), 제9조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제10조(연천군의 의무사항), 제14조(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에 따라 연천군에서 추진할 사업의 진척에 따라 전체 사업 추진의 향방과 협약 이행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연천군은 사업의 인·허가 관련 사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제8조)를 추진하고,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공급관로 설치(제9조),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 사업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 옹벽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추진(제10조)하며, 그 밖에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 서울시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어(제11조), 협약 이행에 대한 선제적인 행정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14)
- 협약서 제16조(공사의 조기착수) 제3항¹5) 확인결과 부지 내에 반입되어 있는 성토재가 불량 토사로 우려되어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양시험분석 실시, 불량 토사 및 폐기물 반출에 대해 연천군의 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나, '토양조사'를 시행하면 공기는 연장될 수 있어서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위해 규정하는 동 조항(공사의 조기착수)과 배치되고, 그 전제조건으로 '서울시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¹⁴⁾ 해당 사업은 연천군 예산으로 추진되며 약 132억원 규모(국유지 매입비 제외)로 추산되고 있음.

¹⁵⁾ 제16조(공사의 조기착수) ③ 부지 내 반입되어 있는 성토재가 불량 토사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 요청이 있을 경우 연천군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불량 토사 및 폐기물로 확인될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외부 반출하다.

- 특히, 해당 부지는 연천군이 매입한 후 5년째 방치 중16)이나 자체 토양 오염도 측정 및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연천군의 국유지 매입과 서울시의 연천군 토지 매입 이전에 이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약서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서 서울시는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설 운영 시 식자재를 연천군 농특산물로 구매하고, '테마파크' 내 농특산물판매장소 제공(제1항제1호), '추모관' 사업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지원(제1항제2호), '운영인력' 연천군민 우선채용에 관한 사항 (제1항제3호)을 규정하였음.

최근 반려동물 관련 시설 조성에 대해 주민 반대가 많고 '추모관'은 동물 장례 기피시설로 인식17)되므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명시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이행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실시협약서 주요내용〉

□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기반시설 지원 및 의무사항
 ○ 행정적 지원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 등 제반 절차 등
 ○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개설(추모관 해당), 상·하수도 등
 ○ 의무사항 :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 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 보강토옹벽(높이 약 9m) 안전성 평가(필요시 보강공사 등)
 □ 토지매각·매입 및 사용
 ○ 감정평가법인 등 2인 통해 토지평가 후 적정한 보상액으로 매각·매입(단, 테마파크 부지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 완료 후)
 □ 연천군 지역 발전 기여 방안
 ○ 농특산물 구매 노력, 테마파크 내 농특산물 판매장소 제공, 운영인력 연천군민 채용 노력 등

¹⁶⁾ 연천군에서 '임진강 유원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 매입하였지만, 민간유치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추진하지 못하면서 본 협약 사업대상지 토지 중 90%를 차지하는 군유지는 5년째 방치 중(2017년~2024년)임.

¹⁷⁾ 중부일보,(2023.10.22.) "혐오시설 안돼" 주민 반발··· 충주시, 반려동물시설 건립 난항, 대소면에 장례식장 설치 인근 지역과 갈등

5) 종합 의견

본 동의안은 '테마파크'와 '추모관' 2개의 세부사업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는 별도로 나누어 받았지만, 예산 편성과실시협약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있어 행정상 혼동을 주는 측면이 있음.

특히, 법령과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추모관'과 달리 '테마파크'는 조례 제3 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에 해당됨에도 최초 업무협약 과정에서 '테마파크'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관련하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사전 작업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실시협약 및 이후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고, '테마파크' 운영과 '추모관' 지역 주민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례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대상지가 서울시가 아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 연천군¹⁸⁾으로 지정된 배경과 서울이 아닌 지역에 예산 562억 7천7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시민 수요가 있는 필요 기피시설을 타 지자체로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도의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총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가 140억 9천7백만원¹⁹) 편성돼 있는데 협약서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 기반시설 조성 전의 상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 주체는 서울시 추천 1인을 포함 총 2인으로 되어 있어²⁰). 만약 연천군에서 1인을 추천하고

¹⁸⁾ 서울특별시청 기준 연천군 군남면까지 자가용(1시간 30분), 대중교통(3시간) 거리, 1호선 연천역에서 약 40분

^{19) &#}x27;반려동물 테마파크' 토지보상비(130억 3천7백만원), '반려동물 추모관' 토지보상비(10억 6천만원)

²⁰⁾ 제14조(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② 제1항의 매입 부지를 포함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 등

- 그 결과가 다를 경우 '적정한 보상액'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예산 집행을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가 상승으로 매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토양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년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의 정화조치에 대하여 협약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토양오염 발생21)에 따라 정화조치에 추가적인 시일이 걸려 사업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고, 토지보상비도 늘어날 수 있어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추모관'과 근거리에 있는 이질적인 장소인 놀이형 '테마파크'를 동시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의식과 공간분리에 대한 전략적인 조경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²²⁾ 되며, 향후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해법이 필요할 것임.
- 본 실시협약 추진을 위해 연천군의 의무가 있는바, 연간 약 6천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연천군에서 제8조 행정적 지원, 제9조 기반시설 지원, 제10조 의무사항, 제14조 토지매입 등 신규사업 추진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세부 사업별 예산 및 공정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제324회 정례회에 본 협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²³), '사업비 추경예산안 편성'을 함께 제출하고 있음.

²인을 통해 토지평가 후 연천군은 적정한 보상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부지를 적시에 매각하고, 서울시는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가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한다.

²¹⁾ 토양오염 정화시업 시례: "한남근린공원 오염토양 정화작업(국방부)(2024년)", "시민의숲 토양오염 정화(2022년)"

^{22) 2024}년 제1회 추경안 "동물보호 문화확산" 사업에 2개 시설 설계비 11억원 편성

²³⁾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1-1910), 행정자치위원회(2024.6.15.), 원안가결 반려동물 추모관 건립 사업', 소요예산 : 7,802백만원 재산목록 : 토지매입(39,273㎡), 기준가격: 2억 6천9백만원), 건물신축(1,060㎡, 기준가격: 7,533백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시설규모가 커 소요예산이 약 562억원에 달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바, 화장장을 제외하고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는 등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실시협약(안)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이 2024. 1. 5. 체결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연천군 업무협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상호 협력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서"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이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③ "협약 당사자"란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이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시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다.
- ④ "본 사업부지" 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연천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권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사업의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위치 및 면적, 총사업비 등은 설계, 공사, 관련 절차 이행, 협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위치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118,519㎡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39,273㎡
- 2. 예정 총사업비
 -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47,685백만원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8,592백만원
- 3. 사업내용
 -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캠핑장, 문화센터 등)의 조성 및 운영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의 조성 및 운영

제5조(사업기간 등)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하다.

- ② 본 사업의 건설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를 말한다.
-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2026년 12월 31일까지
-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2027년 5월 31일까지
- ③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협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④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 지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지연, 기타 협약 당사자 간 협의 후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착공 및 완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연천군과 협의하다.

② 협약 당사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협의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 사업추진 취지, 목적과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추진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완료 후 협약 당사자의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위원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규정된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까지 연천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기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8조(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등) ①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제반

절차 및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착공 및 준공 행사를 시행할 경우 연천군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연천군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③ 연천군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
-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 ④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다.
- ⑤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사업계획서 상 제안한 본 사업시설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①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 1. 진입도로: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
- 2. 상・하수도시설: 본 사업의 사업구역 경계부까지 상・하수도 공급관로 설치
- 3.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세부사항은 본 사업 공정을 감안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연천군의 의무사항) ①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된 구역까지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② 연천군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을 협약 제9조의 기반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면적에서 제외한다.
- ③ 연천군은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반 조성 공사 착공 이전까지 부지 내 옹벽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보강공사 등을 실시한다.
- ④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을 고시한다.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본 사업시설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내에 농특산물판매장소 제공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2.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 주민 지원관련 규정이 마련될 경우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본 사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채용 시 연천군민아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한다.

제12조(지역주민 혜택) ① 서울특별시는 연천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며, 본 사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물(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연천군민과 서울특별시민에게 동등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과 변경승인 등) ①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천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인 연천군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연천군이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연천군이 판단할 경우 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매각 · 매입 및 사용)

- ①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각 전 매입한다.
- ② 제1항의 매입 부지를 포함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을 통해 토지평가 후 연천군은 적정한 보상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부지를 적시에 매각하고, 서울시는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가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전을 전제로 평가하여 매각하다.
- ④ 연천군은 본 사업부지 매각 전이라도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기반 조성 공사에 한해 기반 조성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서울시가 본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의 착수)

① 서울특별시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천군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의 조기착수)

- ① 본 협약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신속 조성이 필요하다고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토지매입 전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연천군은 기반 조성공사 이전에 부지 성토를 위한 양질토사 반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특별시도 양질토사 반입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③ 부지 내 반입되어 있는 성토재가 불량 토사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 요청이 있을 경우 연천군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불량 토사 및 폐기물로 확인될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외부 반출한다.

제17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① 서울특별시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를 즉시 연천군에 통지하고 연천 군과 협의 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천군 또는 관련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의 처리)

연천군은 연천군에서 2016~2018년 시행한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고, 서울특별시는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한다. 다만, 그 결과가 서울특별시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해당 부분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처리)

-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상대방

- 에 민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 ③ 협약 당사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등에 대해 협의 하며,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 우 연천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 1. 본 협약에서 서울특별시의 의무 및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 2. 본 협약에서 연천군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연천군 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민원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협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민원이 제1호의 서울특별시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설계, 시공, 운영)에서 발생하였으나, 서울 특별시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 다. 민원이 제2호의 연천군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연천군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제20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하다.

제2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가 「미군공여구역법」상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2. 연천군 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상의 담당 업무 및 의무를 불이행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지장 이 초래된 경우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조성반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가정책의 변경 또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협의하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21조 제3항에 따른 비용 정산의 경우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제7조제5항, 제11조 및 제12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간내 효력이 있다.

제23조(관련 법규의 적용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군공여구역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분쟁의 해결)

-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서울특별시 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배타적 전속적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본 협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6.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대리하여 푸른도시여가국장 이 수 연 ① 연천군

연천군수 김 덕 현 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세입	소계(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반려동물테마파크	1,618	44,917	1,150	없음	없음	47,685
세출	반려동물추모관	320	7,500	없음	772	없음	8,592
	소계(b)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 총 비용(a-b)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4. 재원조달 방안 :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세수입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시비	세외수입	없음	없음	음 조화	없음	없음	아 조
	지방채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앎	없음	없음	애
합계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 5. 덧붙이는 의견
- 향후 물가상승률, 실시설계 과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 존재
- 6.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참조

[붙임]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정)

(단위 : 백만원)

		총계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산출기초	중계	' 24	' 25	' 26	
			1,618	44,917	1,150	
보상비	-용지배입비 : 12,784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 253백만원	13,037		13,037		
공사비	-공사비 : 27,851백만원 ★도시공원중 주제공원 평균단가,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27,851		27,851		
용역비	-설계비: 1,484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감리비: 2,279백만원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3,763	1,484	2,279		
기타	-설계의도구현 비용: 54백만원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서울시장방침 제143호) -측량 및 지반조사: 134백만원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각종 수수료: 18백만원 -집기,비품구입비: 1,132백만원 -예비비, 시설부대비: 1,696백만원 *예비비(사업비의 5%), 시설부대비(공사비의 0.36%)	3,034	134	1,750	1,150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단위 : 백만원)

		초계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산출기초	총계	' 24	' 25	' 26	' 27	
		8,592	320	7,500		772	
	-용지배입비 : 735백만원						
보상비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여병지모병 변상베용 : 기조년도 고시되기 기모병 변상베용 (편이면전	1,060		1,060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 13백만원, 용지부담금 : 312						
	계비 : 284백만원	5 540		F 540			
공사비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5,546		5,546			
	-설계비 : 284백만원						
용역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809	284	525			
070	-감리비 : 525백만원	000	204	32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설계의도구현 비용 : 27백만원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서울시장방침 제143호)						
	-측량 및 지반조사 : 36백만원						
기타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1,177	36	369		772	
Лu	-각종 수수료 : 11백만원	1,177	00	000		112	
	-집기,비품구입비 : 761백만원						
	-예비비, 시설부대비 : 342백만원						
	*예비비(사업비의 5%), 시설부대비(공사비의 0.36%)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의 안 번 호 1936

제출년월일: 2024년 5월 2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반려동물이 증가 하고 서울시 가구 중 22.2%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반려인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숙박시설 부족으로 숙박·당일 여행도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시 한해 13만4천마리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비율도 높고, 불법매장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 나. 이에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은 반려동물 관광 여가문화 및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월 5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양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한 본 실시협 약(안)에는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개요

○ 협 약 명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

○ 당 사 자 : 푸른도시여가국장 - 연천군수

○ 목 적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결정

나. 추진경위

○ ('24.01.05.) 서울특별시-연천군 업무협약 체결

다.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권리와 의무,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 의무.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연천군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 기여방안, 지역주민 혜택에 관한 사항
-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공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
-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실시협약(안) 구성

- 전체 구성: 제24조로 구성
-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권리와 의무(제3조), 사업내용 (제4조), 사업기간 등(제5조), 사업계획서의 변경(제6조), 서울 특별시의 의무(제7조),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제8조)
- 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제9조), 연천군의 의무사항(제10조), 지역발전 기여방안(제11조), 지역주민 혜택(제12조), 사업의 시 행승인과 변경승인 등(제13조)
- 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제14조), 공사의 조기착수(제15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제17조), 문화재의 처리(제18조),

민원처리(제19조), 협약의 효력 및 변경(제20조), 협약의 해지 등(제21조), 협약의 종료(제22조), 관련 법규의 적용 등(제23조), 분쟁의 해결(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도부터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윤 민 주무관(☎2133-7649)

붙임 1. 실시협약서(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실시협약(안)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이 2024. 1. 5. 체결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연천군 업무협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 상호 협력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서"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이하 변경을 포함하다)를 말하다.
- ③ "협약 당사자"라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이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및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시설로서,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 ④ "본 사업부지" 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연천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한다)」제11조에 따른 사업승인권자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본 사업의 사업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위치 및 면적, 총사업비 등은 설계, 공사, 관련 절차 이행, 협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위치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118,519㎡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39.273㎡
- 2. 예정 총사업비
 -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 47,685백만원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8.592백만원
- 3. 사업내용
 - 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캠핑장, 문화센터 등)의 조성 및 운영
 - 나.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의 조성 및 운영

제5조(사업기간 등)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 ② 본 사업의 건설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날까지를 말한다.
-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2026년 12월 31일까지
-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2027년 5월 31일까지
- ③ 본 사업의 운영기간은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협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④ 사업계획에 대한 인·허가 지연,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지연, 기타 협약 당사자 간 협의 후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착공 및 완공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연천군과 협의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협의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 사업추진 취지, 목적과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추진 실현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완료 후 협약 당사자의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민간위원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연천 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 ③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규정된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서울특별시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인 가 신청 시까지 연천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
- ⑤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에서 반려동물의 사체와 유골을 처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유기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8조(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등) ①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제반절

- 차 및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반영 등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착공 및 준공 행사를 시행할 경우 연천 군은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② 연천군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③ 연천군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협의
-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 ④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다.
- ⑤ 연천군은 서울특별시가 사업계획서 상 제안한 본 사업시설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9조(연천군의 기반시설 지원 등) ① 연천군은 본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 1. 진입도로: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
- 2. 상・하수도시설: 본 사업의 사업구역 경계부까지 상・하수도 공급관로 설치
- 3.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세부사항은 본 사업 공정을 감안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시행하다.
- 제10조(연천군의 의무사항) ①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 간 협의된 구역까지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② 연천군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을 협약 제9조의 기반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면적에서 제외하다.
- ③ 연천군은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반 조성 공사 착공 이전까지 부지 내 옹벽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보강공사 등을 실시하다.
- ④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변경) 을 고시한다.
- 제11조(지역 발전 기여 방안) ①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연천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1. 본 사업시설 조성 후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는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내에 농특산물판매장소 제공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다.

- 2.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지원관련 규정이 마련될 경우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본 사업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채용 시 연천군민아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지역 발전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연천군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지역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한다.

제12조(지역주민 혜택) ① 서울특별시는 연천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며, 본 사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물(휴게시설 및 주차장 등)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연천군민과 서울특별시민에게 동등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과 변경승인 등) ① 서울특별시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1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천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중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인 연천군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연천군이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연천군이 판단할 경우 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매각・매입 및 사용)

- ① 연천군은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각 전 매입한다.
- ② 제1항의 매입 부지를 포함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을 통해 토지평가 후 연천군은 적정한 보상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사업부지를 적시에 매각하고, 서울시는 연천군에서 시행 예정인 부지 내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가 완료된 후 토지를 매입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시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전을 전제로 평가하여 매각한다.
- ④ 연천군은 본 사업부지 매각 전이라도 본 협약서 제16조에 따른 기반 조성 공사에 한해 기반 조성 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서울시가 본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의 착수)

① 서울특별시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 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서울특별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군공여구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천군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미군공여구역법」_제11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의 조기착수)

- ① 본 협약 제14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신속 조성이 필요하다고 협약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토지매입 전 기반 조성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연천군은 기반 조성공사 이전에 부지 성토를 위한 양질토사 반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서울특별시도 양질토사 반입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③ 부지 내 반입되어 있는 성토재가 불량 토사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 요청이 있을 경우 연천군은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불량 토사 및 폐기물로 확인될 경우 연천군의 부담으로 외부 반출한다.

제17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① 서울특별시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서울특별시는 이를 즉시 연천군에 통지하고 연천군과협의 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협약 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천군 또는 관련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의 처리)

연천군은 연천군에서 2016~2018년 시행한 매장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에 통지하고, 서울특별시는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한다. 다만, 그 결과가 서울특별시에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해당 부분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처리)

-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상대방에 민

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 ③ 협약 당사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며,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연천군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 1. 본 협약에서 서울특별시의 의무 및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 2. 본 협약에서 연천군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 규정한 사항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연천군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협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민원이 제1호의 서울특별시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설계, 시공, 운영)에서 발생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 다. 민원이 제2호의 연천군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연천군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제20조(협약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가 「미군공여구역법」상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2. 연천군 또는 서울특별시가 협약상의 담당 업무 및 의무를 불이행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조성반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국가정책의 변경 또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 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연천군과 서울특별시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 당사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협의하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날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21조 제3항에 따른 비용 정산의 경우 정산이 완료되는 날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제7조제5항, 제11조 및 제12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간내 효력이 있다.

제23조(관련 법규의 적용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군공여구역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분쟁의 해결)

-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서울특별시 본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배타적 전속적 1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본 협약 당사자는 상호 신뢰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6.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대리하여 푸른도시여가국장 이 수 연 ① 연천군

연천군수 김 덕 현 ①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2. 비용추계의 전제 :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입	소계(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반려동물테마파크	1,618	44,917	1,150	없음	없음	47,685
세출	반려동물추모관	320	7,500	없음	772	없음	8,592
	소계(b)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총 비용(a-b)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4. 재원조달 방안 : 시 예산편성액으로 조달

(단위 : 백만원)

						,	<u> </u>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세수입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시비	세외수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방채 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민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합계	1,938	52,417	1,150	772	없음	56,277

- 5. 덧붙이는 의견
- 향후 물가상승률, 실시설계 과정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 존재
- 6. 작성자 : 푸른도시여가국 윤 민 주무관(2133-764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 참조

[붙임]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정)

(단위 : 백만원)

		초게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산출기초	총계	' 24	' 25	' 26	
		47,685	1,618	44,917	1,150	
보상비	-용지매입비: 12,784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253백만원	13,037		13,037		
공사비	-공사비 : 27,851백만원 ★도시공원중 주제공원 평균단가,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27,851		27,851		
용역비	-설계비: 1,484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감리비: 2,279백만원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3,763	1,484	2,279		
기타	-설계의도구현 비용: 54백만원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서울시장방침 제143호) -측량 및 지반조사: 134백만원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각종 수수료: 18백만원 -집기,비품구입비: 1,132백만원 -예비비, 시설부대비: 1,696백만원 *예비비(사업비의 5%), 시설부대비(공사비의 0.36%)	3,034	134	1,750	1,150	

2.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단위 : 백만원)

		초계	연차별 소요예산			
구분	산출기초	총계	' 24	' 25	' 26	' 27
		8,592	320	7,500		772
보상비	-용지매입비: 735백만원 *기획재정부령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총괄지침' 제34조제3항제3호관련 [별표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기준년도 공시지가×지목별 보상비율×편입면적 -용지제세: 13백만원, 용지부담금: 312	1,060		1,060		
공사비	- 공사비 : 5,546백만원 *공공 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5,546		5,546		_
용역비	─설계비 : 284백만원*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감리비 : 525백만원*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809	284	525		
기타	-설계의도구현 비용 : 27백만원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서울시장방침 제143호) -축량 및 지반조사 : 36백만원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각종 수수료 : 11백만원 -집기,비품구입비 : 761백만원 -예비비, 시설부대비 : 342백만원 *예비비(사업비의 5%), 시설부대비(공사비의 0.36%)	1,177	36	369		772